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 세분화하는 내용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7033호, '20.2.18., 일부개정, '20.8.19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법의 신설 조항(법 제65조 제3항) 추가(안 제5조 제1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 금액 개정(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으로 한다.

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의 조합의 겸업 금지 또는 법 제39조의 조합 상임이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주상호 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	250	350	500
다. 법 제12조제2항과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입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2호	250	350	500
라. 법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법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 364조 또는 제36	법 제65조제1항제3호	250	350	500

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정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총회를 소집한 경우				
마.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호	250	350	500
바.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5호	250	350	500
사. 법 제4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법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6호	250	350	500
아. 정관, 조합원명부,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사무보고서, 법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기록할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록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7호	250	350	500
자. ~ 거. (현행과 같음)				
너.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	법 제65조제1항제15호	250	350	500

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더.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6호	250	350	500
러. 행정관청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7호	250	350	500
며.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5조제3항제1호	150	200	300
버. 법에 따른 공고·통지·보고 또는 신 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5조제3항제2호	150	200	300
서. 법에 따른 공고·통지·보고 또는 신 고를 부정하게 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8호	250	350	500
어.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의 열람·복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을 거부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9호	250	350	500
저.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 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 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5조제3항제3호	150	200	300
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20호	250	350	500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의 조합의 겸업 금지 또는 법 제39조의 조합 상임이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호	200	300	500	가. 법 제6조의 조합의 겸업 금지 또는 법 제39조의 조합 상임이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	200	300	500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	250	350	500
다. 법 제12조제2항과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입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2호	200	300	500	다. 법 제12조제2항과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입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2호	250	350	500
라. 법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법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 364조 또는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회를	법 제65조제1항제3호	200	300	500	라. 법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법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 364조 또는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회를	법 제65조제1항제3호	250	350	500

현행					개정안				
소집하거나 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정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하거나 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정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총회를 소집한 경우				
마.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호	200	300	500	마.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호	250	350	500
바.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5호	200	300	500	바.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5호	250	350	500
사. 법 제4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법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6호	200	300	500	사. 법 제4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법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6호	250	350	500
아. 정관, 조합원명부,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사무보고서, 법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기록할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록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7호	200	300	500	아. 정관, 조합원명부,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사무보고서, 법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기록할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록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7호	250	350	500
자.~거. (생략)	(생략)				자.~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너.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5호	200	300	500	너.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5호	250	350	500
더.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6호	200	300	500	더.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6호	250	350	500
러. 행정관청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7호	200	300	500	러. 행정관청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7호	250	350	500
머.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8호	100	200	300	머.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5조제3항제1호	150	200	300
버. 법에 따른 공고·통지·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9호	100	200	300	버. 법에 따른 공고·통지·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5조제3항제2호	150	200	300
서. 법에 따른 공고·통지·보고 또는 신고를 부정하게 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9호	200	300	500	서. 법에 따른 공고·통지·보고 또는 신고를 부정하게 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8호	250	350	500
어.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복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20호	200	300	500	어.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복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9호	250	350	500
저.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21호	100	200	300	저.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5조제3항제3호	150	200	300
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22호	200	300	500	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20호	250	350	500